

# 돼지도체 대표기준가격 변경

농림수산식품부의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도체 대표 기준가격이 박피에서 탕박으로 변경('12.1.1월부터 적용)되었다!

축산물도매시장·공판장의 점유율이 낮은 박피(29.7%)를 기준가격으로 이용할 경우 상장두수 변화에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하나, 점유율이 높은 탕박(70.3%)으로 기준가격을 변경할 경우 가격형성의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도모가 가능하다.

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돼지도체 대표 경락가격 기준 변경에 따라

**1**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경락가격 표시에서 박피와 탕박 위치를 변경하였고

**2** 통계월보는 '12년 1월부터, 통계연보는 '11년 연보부터

**3** 월간 「등급정보 365+」는 '12년 2월호부터 적용한다.

